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목 차>

1.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용량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작 성 자	이름	정현우
	담당부서 (과)	전기통신제품안전 과		직급	공업사무관
	국장	오유천		연락처	043-870-5445
	과장	김명곤		이메일	hyunwoo.j@mail. go.kr

2026. 05. 04.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오유천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용량 확대												
	2.규제조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 별표 4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5.25~2026.07.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용량 확대(별표 4) － 기술발전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가 출시됨에 따라 인증대상 용량 확대를 통한 제품 출시 지원												
	7.규제내용	○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정격용량 200 kVA 이하 → 정격출력 500 kVA 이하)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전기차충전기 제조 및 수입업체 ○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 국내 시장규모: 약 4,000억원 추산(`24년)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전기차충전기 제조 및 수입업체</td><td>약 150개</td></tr><tr><td>이해관계자</td><td>국민(소비자)</td><td>약 5100만명</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기차충전기 제조 및 수입업체	약 150개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약 5100만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기차충전기 제조 및 수입업체	약 150개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약 5100만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전기차충전기 안전관리 확대, 제품 출시 지원 초급속 충전기의 전기안전 KC인증이 가능하여 사용전검사, 조달 납품 및 보조금 사업 등이 간소화됨에 따라 제조업체 입장에서 규제완화 측면 존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913.61	307.1	606.51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913.61	307.1	102.92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안전확인대상제품		[별표4] 안전확인대상제품	
사. 전기기기	22) 전기차 충전기(정 격출력이 200 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사. 전기기기	22) 전기차 충전기(정 격출력(이 500 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충전시간 단축 등의 시장수요를 반영한 초급속(200 kVA초과) 전기차 충전기가 출시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200 kVA → 500 kVA)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안전관리대상 확대(시행규칙 개정) - 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내용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초급속 충전기 KC인증에 따른 제품안전 및 국민 안전 확보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초급속(200kVA 초과) 충전기의 안전관리, 전기안전 KC인증 불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200kVA 초과 충전기의 법정인증(전기안전 KC인증)을 통한 제품 출시 지원 ○ 정부 주도의 일관된 제품 시험을 통한 안전성검증으로 제품안전 확보	○ 정부 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사회적 비용 발생
규제대안2	○ 기업 자율 제품안전관리 체계 운영	○ 200kVA 초과 충전기의 KC인증 불가 ○ 정부 주도의 일관된 제품 안전성검증 불가 ○ 영세기업 제품 안전성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기차충전기 관련 산·학·연	- 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 관리 추진계획 및 추진현 황 공유 (‘21.10.14., 온라인회의)	이견없음	계획대로 추진
전기차충전기 관련 산·학·연	-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 관련 의견 수렴 - 전기차충전기 전문위원회 개최(‘22.7.15.)	이견없음	원안대로 의결
전기차충전기 관련 산·학·연	-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 안전기준 개정 논의 - 전기차충전기 전문위원회 개최(‘24.4.30.)	이견없음	원안대로 의결
전기차충전기 관련 산·학·연	-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 안전기준 개정안 확정 등 - 전기차충전기 전문위원회 개최(‘24.10.8.)	이견없음	원안대로 의결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로, 안전관리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안전 추구 필요
- 정부 입찰 등 관급 납품 시에 전기안전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제품 유통 활성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인증범위 확대 필요
 - 관련 업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시에 별도 반대의견 없음.

3. 규제목표

- 초급속(200 kVA 초과)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편입으로 관련 제품 사업화 지원을 통한 제품안전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시행규칙 개정으로 초급속 전기차충전기의 전기안전 인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제품 사용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규제 부담으로 규제목적 달성을 도모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 200 kVA이하의 전기차충전기는 이미 KC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운영중에 있으며,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규제 대상과 내용이 명확함
- ◆ 제조업체에서 전기차충전기의 안전관리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주도의 안전성검증 요청한 사항으로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한 업체들의 이견없음
- ◆ 초급속 충전기의 KC인증이 가능하여 사용전검사, 조달 납품 및 보조금 사업 등이 간소화됨에 따라 제조업체 입장에서 규제완화 측면이 있음

- 경쟁영향평가

- ◆ 초고속 충전기의 출시를 지원하여 제품 및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경쟁능력 제한,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 경쟁제한 효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 제품의 모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준수하는 사항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파악되며, 피규제자의 규제이행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산업소방안전
② 규제 방식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전기차충전기의 제조/수입업체로 기업 규모가 다양하여 기업현황 분포 파악이 어려움. 이에 동법의 타제품 안전관리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
④ 대상 업종		전기차충전기 제조/수입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 유사사례 분석 - 국내외 유사입법례를 검토 시 인증 의무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음 ○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旣 관리 중 ○ 이에 따라 동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지속적으로 KC인증 취득 => 동 규제 건은 KC인증대상 제품의 적용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사안이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차등화 불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동 규제 건은 기존 KC인증 대상이었던 ‘전기차충전기’의 적용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경쟁 제한 효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모든 업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으로 규제 차등화 적용 불필요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대상 제품의 모든 제조 및 수입업자가 준수하는 사항으로 고용친화성과 관계 없음
- 개인 수입사업자도 안전확인신고(인증)을 받는 사례 다수 존재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대상 제품의 모든 제조 및 수입업자가 준수하는 사항으로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 2년마다 규제의 재검토 실시중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본 시행규칙은 공포 후 모든 제조 및 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본 시행규칙은 공포 후 모든 제조 및 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본 시행규칙은 공포 후 모든 제조 및 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본 시행규칙은 공포 후 모든 제조 및 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본 시행규칙은 공포 후 모든 제조 및 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본 시행규칙은 공포 후 모든 제조 및 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유럽 등 해외에서도 전기차충전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국제표준(IEC 61851-1 등)을 기준으로 시험·인증제도 운영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사항 없음	—	—

○ 타법사례

- 해당없음(전기차 충전기의 출시 전 인증제도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 관리중)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안전관리대상 확대(시행규칙 개정)>

- 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06.51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7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안전관리대상 확대(시행규칙 개정)

- 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913.61	307.1	606.5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913.61	307.1	606.51

기업준비용	606.51	연간균등준비용	102.92
-------	--------	---------	--------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해당 업계가 참여한 간담회 및 전문위원회 결과, 안전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피규제자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안전관리대상 확대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인증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지정된 기존 인증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 규제 사항에 대한 시험인증기관의 추가 설비는 구축 예정('26.下)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공유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21. 10. 14.)
-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 등 의견 수렴('22.~'26.)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통해 법령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초급속 충전기의 보급이 지속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안전 확보
- 초급속 충전기의 전기안전 인증이 가능하여 사용전검사, 조달 납품 및 보조금 사업 등이 간소화됨에 따라 제조업체 입장에서 규제완화 측면이 있다는 판단
- 업체 요청에 의한 안전관리대상 확대 개정 사항으로 업계가 충분히 이행 가능한 규제이며, 최소한의 절차로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7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안전관리대상 확대(시행규칙 개정) - 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913.61	307.1	606.5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913.61	307.1	606.51
기업순비용		606.51	연간균등순비용	102.92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안전관리대상 확대(시행규칙 개정)

- 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전기차 충전기 수입/제조업자
활동제 목	안전확인신고 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913,615,334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인증비용 × 인증 건수('25년 기준 116건, 통상 기업별 2개 모델 인증 보유) - 초급속 충전기는 1개 모델만 인증 보유 예상(수요가 높지 않음)(116*8230414)
근거설명	1. 제품시험비용 ○ 분석의 가정 -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시험비용 분석을 위해 연간 안전확인 신고 수와 시험 비용, 분석대상 기간(7년)을 곱하여 직접비용 산출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제품(고출력 전기차 충전기)은 기존 전안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을 통해 시험할 수 있음(설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음) - 연간 안전확인 신고 수는 작년 신규 전기차 충전기 신고 건수로 계산함. - 시험 비용은 현행 수수료를 반영함 ○ 근거제시 - (안전확인) 전안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안전확인 신고현황)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3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신규 접수되어 처리한 안전확인신고는 약

	50여건 － (시험비용) 현행 전기차 충전기 시험비용으로 산출함. * 현재 8,432,000원
--	---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활동제목	충전 시간 절감
편익항목	시간
편익	307,104,002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국내 전기차 수 × 평균 연 0.01회 이용 × 사회적 비용 절감(30분, 최저시급/2) (1010000*0.01*5160)
근거설명	